

제234회 정례회
2004. 12. 14(화)

검 토 보 고 서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영조례증개정조례안

교육사회전문위원

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
- 전문위원 지용옥입니다.

- 2004년 12월 7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고, 12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, 12월 14일 제5차 교육사회위원회에 상정된, “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증개정조례안”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.

- 먼저, 동 조례안의 제안이유는,
 -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하향추세와 관련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자활공동체의 자립·자활과 재정부담능력을 감안하고 자활사업추진을 위하여 효율적인 기금활용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서,

- 주요 내용은,
 - 대여자금의 이자율을 연 3%에서 연1%로, 연체이자율은 연 15%에서 연 12%로 각각 하향 조정하고 지난 2004년 7월 2일자로 개정된 「충청북도지방공무원정원관리 등에관한규정」에 의거 “기초생활보장담당사무관”을 “기초생활 담당사무관”으로 명칭을 변경하려는 것입니다.

□ 다음으로 검토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.

○ 금번 제출된 “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
조례안”은

- 생활형편이 어렵지만 자립의지가 강한 자활공동체에 융자해 주는 기초생활보장기금의 대출금리를 대폭 인하함으로써,
- 자활공동체의 자활을 돕고, 기금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
- 다만, 이자수입 감소에 따른 기금운용대책에 대해서는 상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.

□ 이상으로 “충청북도기초생활보장기금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”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